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성길용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-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,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7분 자유발언에 대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일정한 기한 내에 보고 받아 보다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의원의 7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발언 의원에게 보고하는 내용 신설(안 제28조의2)
 - 시장은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3년 11월 22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2
 - 전자메일 : kbh0810@korea.kr

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중 “동의자의”를 “동의자 외”로 한다.

제2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동회의 의제성립)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회는 <u>동회자의 1인 이상</u>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</p>	<p>제21조(동회의 의제성립) ----- ----- ----- <u>동회자 외</u> ----- -----.</p>
<p>제28조의2(7분 자유발언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28조의2(7분 자유발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시장은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